



현장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정일자 : 2022. 07. 22.

개정일자 : 2023. 06. 07.

개정번호 : 01

목 차

- 제 1 장 안전·보건 업무 3
 -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4
 - ◆ 안전·보건업무 요약 5
- 제 2 장 안전실무 12
 - ◆ 안전관리자 일일 활동 13
 - ◆ 안전·보건 교육 14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
 - ◆ 근로자 건강검진 37
 - ◆ 작업환경측정 38
 - ◆ 안전·보건 회의 39
 -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 40
 - ◆ 휴게시설 관리 42
 - ◆ 서류의 보존 43
- 제 3 장 참 고 45
 - ◆ 법적근거[별표1~80] 46
- 제 4 장 부 록 147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8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승 인
부 서	안전보건팀	안전보건팀	안전임원	대표이사
직 책	과 장	부 장	상 무	
성 명	김 동 우	조 경 훈	안 종 설	신 승 호
서 명				
일 자	2023. 06.	2023. 06.	2023. 06.	2023. 06.

 강남건설	현장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정일자 : 2022. 07. 22.
		개정일자 : 2023. 06. 07.
		개정번호 : 01

개정이력

장	페이지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및 사유	승인자
전체		01	2023. 06.	안전관리자 직무 명확한 근거 추가 [법적근거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1	6	"	"	제정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노사합동점검, 비상대비대응 훈련]	
"	7	"	"	제정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8	"	"	관계법령 개정 외 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물질안전보건 교육, 휴게시설의 설치]	
"	11	"	"	제정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서류의 보존]	
2	13	"	"	제정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안전관리자 일일 활동]	
"	14	"	"	직무교육 상세설명 추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	33	"	"	제정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36	"	"	제정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물질안전보건 교육]	
"	37	"	"	제정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42	"	"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추가 [휴게시설 관리]	
"	43	"	"	제정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서류의 보존]	
3	46	"	"	제정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현장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법적근거]	
4	148	"	"	제정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 1 장]

안전 · 보건 업무

◆ 안전 · 보건관리자 업무

구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비고
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2항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2조]	
업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심의·의결한 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 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보건직무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목부터 ㉣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안전 · 보건업무 요약

□ 시공 전

구분	목 록	내 용	법규	비고	
착공전	선임신고 준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보관	산안법 [제62조1항]	[별표 2]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작성 하여 관할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산안법 [제17조1항] [제18조1항]		
		<table border="1"> <tr> <td>도 급</td> <td>착공 후 14일 이내 선임계 제출</td> </tr> <tr> <td>하도급</td> <td>계약 후 14일 이내 선임계 제출</td> </tr> </table>	도 급		착공 후 14일 이내 선임계 제출
도 급	착공 후 14일 이내 선임계 제출				
하도급	계약 후 14일 이내 선임계 제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PC공사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보관	산안법 [제15조1항]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 지 않는경우	500	500	500	코.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마. - 1)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마. - 3)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 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다. - 1)	

□ 시공 중

구분	목 록	내 용	법규	비고
일	작업장 순회 점검일지	√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2일에 1회이상 작성 [현장소장 점검결과 기재]	산안법 [제64조1항2호]	[별표 3]
			시행규칙 [제80조1항1호]	
월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결정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내용 기록 보존	산안법 [제36조3항]	[별표 3]
			시행규칙 [제37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전체 사용 현황 작성보관 [보호구지급대장 첨부, 원청사, 협력사 각각 보관]	산안법 [제72조1항]	[별표 4]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	√ 회의인원 구성→월1회 실시, 회의록 작성→ 근로자 전파, 게시	산안법 [제64조1항1호]	[별표 5]
	정기안전교육	√ 근로자 매분기 6시간(2시간/월) 이상 교육	산안법 [제29조1항]	[별표 6]
			시행규칙 [제26조1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4]	
2개월	노사협의체 회의	√ 정기회의→2개월 1회 실시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실시	산안법 [제75조3항,4항]	[별표 7]
			시행령 [제65조]	
	노사합동 안전점검	√ 도급인, 관계수급인과 도급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1명 2개월에 1회 이상 점검	산안법 [제64조2항]	[별표 8]
			시행규칙 [제82조]	
반기 (6개월)	안전검사	√ 주기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삿짐 제외), 곤돌라]	산안법 [제93조3항]	[별표 9]
			시행규칙 [제126조]	
	작업환경측정	√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진 등 반기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	산안법 [제125조1항]	[별표 9]
		시행규칙 [제190조]		
	비상대비대응 훈련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처법 [제4조1항1호]	[별표 10]
			중처법 시행령 [제4조]	

구분	목 록	내 용	법규	비고
연간	관리감독자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16시간 교육	산안법 [제29조1항] 시행규칙 [제26조1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11]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실시	산안법 [제129조3항] 시행규칙 [제197조]	[별표 12]
수시	특수건강진단	√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 실시	산안법 [제130조1항1호] 시행규칙 [제202조1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23]	[별표 1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산안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204조]	[별표 14]
	신규채용자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시 면제)	산안법 [제29조2항] 시행규칙 [제26조1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15]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교육	산안법 [제29조2항,3항] 시행규칙 [제26조1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4]	
	특별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목 제39호 제외한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교육	산안법 [제29조3항] 시행규칙 [제26조1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4]	
			산안법 [제29조3항] 시행규칙 [제26조1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목 제39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교육 (외부 교육기관에서 이수)			

구분	목 록	내 용	법규	비고
수시	특별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목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및 단기간 작업은 2시간 이상 교육	산안법 [제29조3항] 시행규칙 [제26조1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15]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교육 (외부 교육기관에서 이수)	산안법 [제31조1항] 시행규칙 [제26조1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4]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교육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설장비 근로자 최초 2시간(특별교육시 면제) 교육	산안법 [제77조2항] 시행규칙 [제95조1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16]
	물질안전 보건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사용·운반하는 작업에 근로자 배치 및 새로운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 물질이 도입시 1시간 이상 교육	산안법 [제114조3항] 시행규칙 [제169조]	[별표 17]
	휴게시설의 설치	√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 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 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산안법 [제128조의2]	[별표 18]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 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 은 경우	300	400	500	다. - 2)	①작업장 순회점검 미 이행시 ②위험성 평가 미 이행시 ③협의체 미 운영시 ④노사협 의체 미 운영시 ⑤노사합 동점검 미 이행시 ⑥안전인 증대상기 계 미확인 ⑦비상대 비 훈련 미 이행시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마. - 2)	①작업장 순회점검 미 이행시 ②위험성 평가 미 이행시 ③노사협 의체 미 운영시 ④안전인 증대상기 계 미확인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라.	①위험성 평가 미 이행시
	√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u>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u>	10	20	50	파. - 1)	①정기안 전교육, 신규채용 교육, 작 업내용 변 경시교육 미 이행시
	√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u>측정대상 작업장 근로자 1명당</u>	20	50	100	야.	①작업환 경측정 미 이행시
	√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u>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u>	50	250	500	파. - 2)	①관리감독자교육 미 이행시
	√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u>건강진단 대상근로자 1명당</u>	10	20	30	너.	①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 치전건강진단 미 이행시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u>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u>	10	20	50	너.	①기초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자 채용시
	√ 법 제29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u>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u>	50	100	150	거.	①특별안전교육 미 이행시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u>대상근로자 1인당</u>	10	20	50	그. - 1)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미 이행시
	√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u>대상근로자 1인당</u>	50	100	150	그. - 2)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안전교육 미 이행시
	√ 법 제114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u>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u>	50	100	300	티.	① 물질안전보건교 육 미 이행시
	√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1,500	1,500	1,500	햐.	① 휴게시설 미 운영시
	√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u>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u>	50	250	500	겨.	①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 이행시

위반시의 조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의 경우	√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1,000만원 초과 시 1,000만원)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과태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해설 2022. 6 [고용노동부 제작]
	√ 50%이상 100%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 50%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사용 내역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의 경우	√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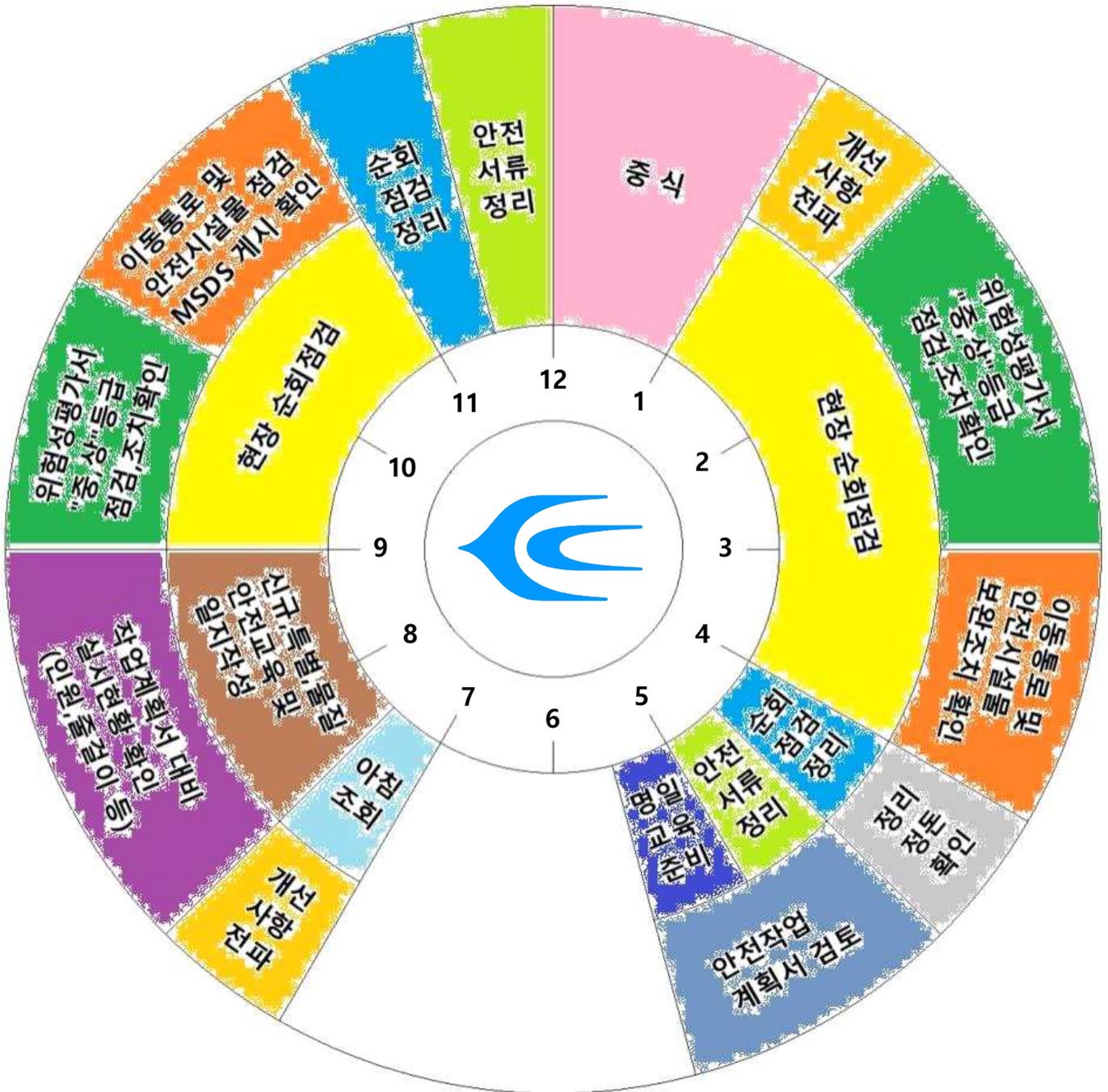
□ 준공 시

구분	목 록	내 용	법규	비고
준공	서류의 보존	√ 현장 준공 후 법적 이관서류 본사 제출 [문서 스캔파일 제출] ⇨ 검토후 문서고 보관	산안법 [제164조]	[별표 19]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 은 경우(각 서류당)	30	150	300	무.	①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미 보존시

[제 2 장]

안전실무



※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그림은 평시 일정이며, 위험성평가회의, 노·사협의체회의, 노·사합동점검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됩니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회 일반사업의 일부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

① 근거법령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기준 [별표 20]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별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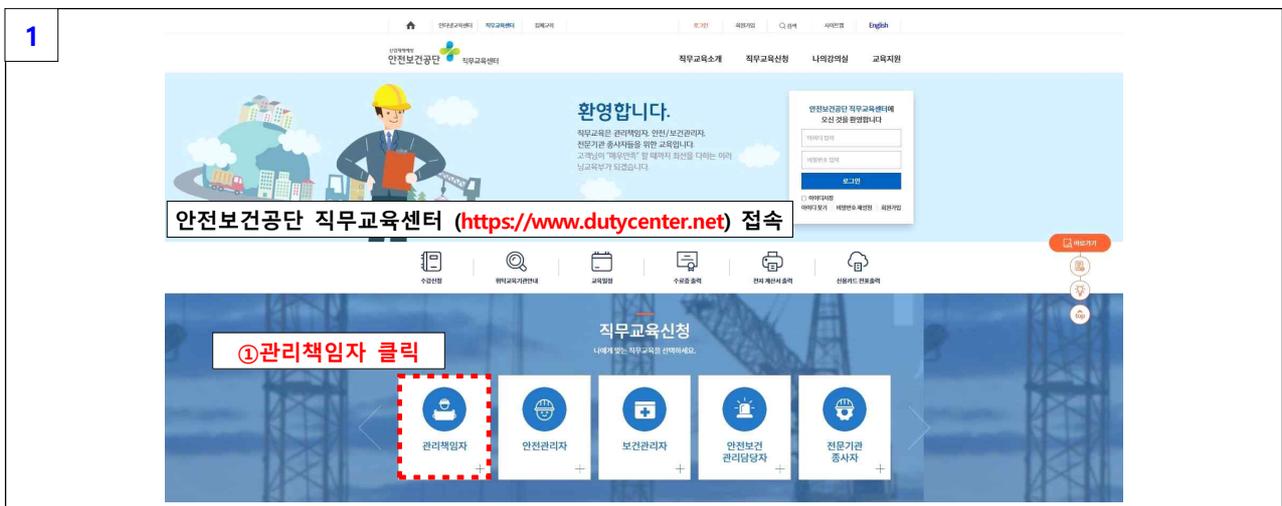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중지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 그 선임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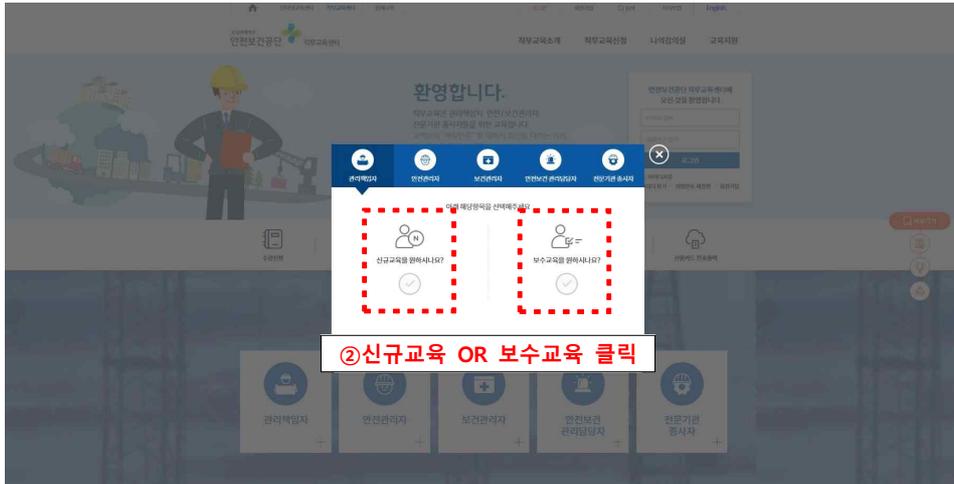
④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교육 [별표 21]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시간 이상 혼합교육(인터넷교육2시간+집체교육4시간) 또는 집체교육(6시간)	6시간 이상 혼합교육(인터넷교육2시간+집체교육4시간) 또는 집체교육(6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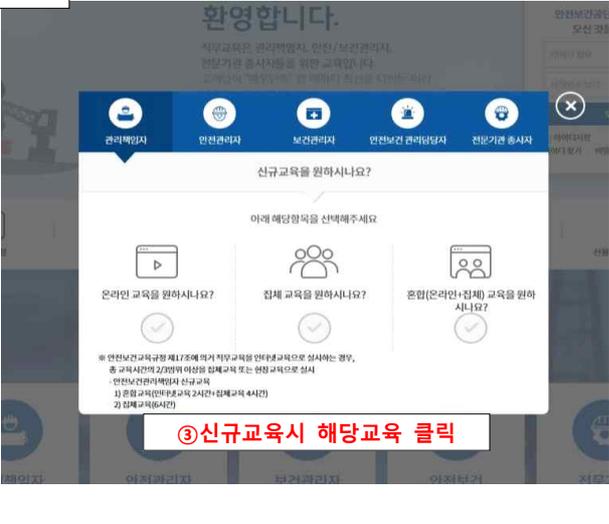
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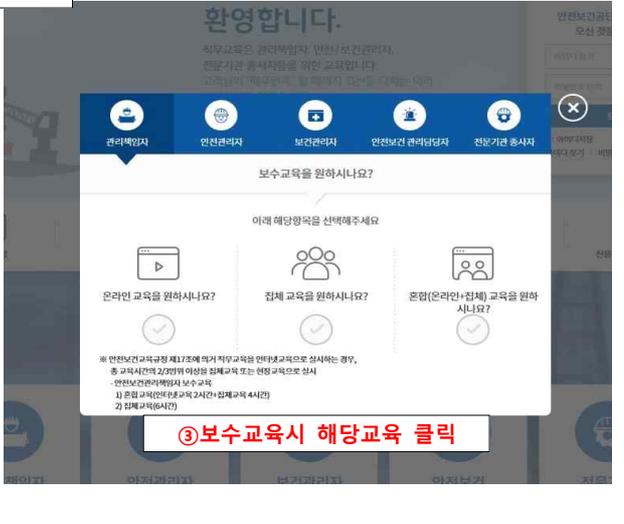
2



3-A



3-B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더. - 1)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교육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다. - 2)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미이행시

2. 안전관리자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① 근거법령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②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별표 22]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이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③ 안전관리자의 직무 [별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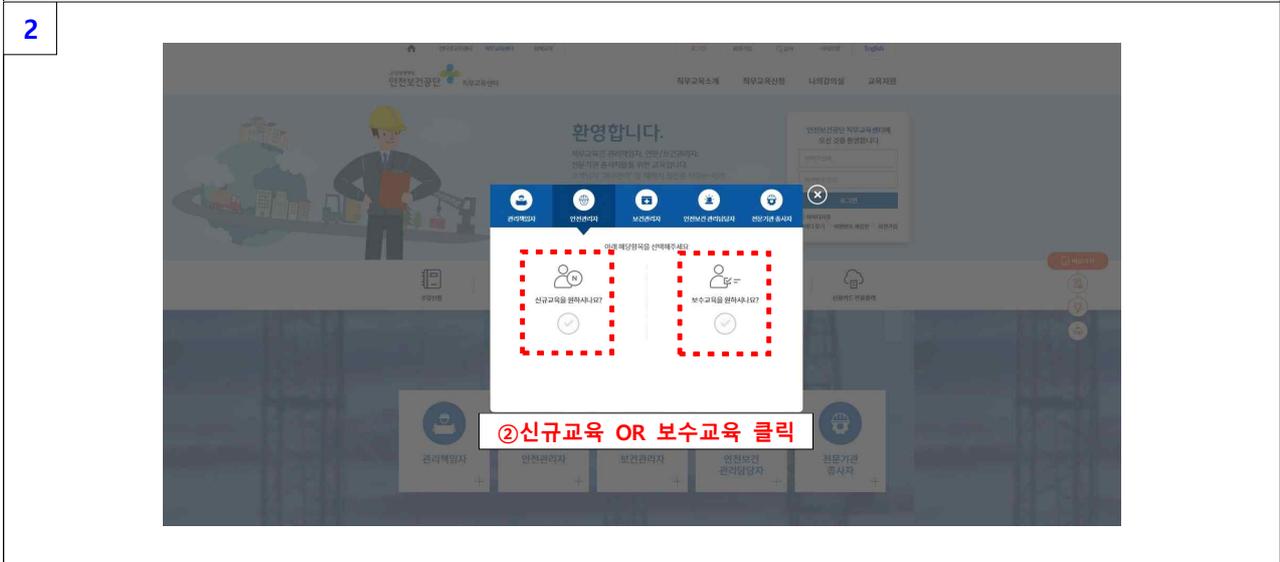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별표 24]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혼합교육(인터넷교육10시간+집체교육24시간) 또는 집체교육(34시간)	24시간 이상 혼합교육(인터넷교육8시간+집체교육16시간) 또는 집체교육(24시간)

*신규-선임 후 3개월이내, 보수-매년 2년기준 전후 3개월사이 교육

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더. - 1)	①안전관리자 미교육시
	√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마. - 2)	①안전관리자 직무 미이행시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등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

① 근거법령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 [별표 25]

사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별표 2]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별표 21]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혼합교육(인터넷교육2시간+집체교육4시간) 또는 집체교육(6시간)	6시간 이상 혼합교육(인터넷교육2시간+집체교육4시간) 또는 집체교육(6시간)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1.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신청방법과 동일함.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더.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교육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이행시

4. 관리감독자 [별표 26]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

① 근거법령 [별표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② 관리감독자의 선임기준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건설업	5명 이상

③ 관리감독자의 직무 [별표 28]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사항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같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산업보건의
-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별표 29]

교육대상	정기교육	
	교육시간	교육방법 (택1)
관리감독자 지위에있는 사람	연간16시간 이상	-집체교육(16시간) 이수 -혼합교육(집체교육 8시간+인터넷교육 8시간) 이수 -우편교육(16시간) 이수

⑤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 집체교육(16시간) 신청

1

대한산업안전협회 집체교육센터 (<https://edu.safety.or.kr>) 접속

2

등급/유형	과목명	교육일	교육장	교육수료료	신청가능
미입금	2023년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업) - 비환급	2023.06.12 16시간	서울교육강 교육센터	208,000원	신청가능 (20/50) 신청하기 >
미입금	2023년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업) - 비환급	2023.06.13 16시간	서울교육강 교육센터	116,000원	신청가능 (3/25) 신청하기 >
미입금	2023년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업), 집체+인 터넷 *원격 : 집체교육 종료 후 필수일 이내 학습문 자 영도 발송	2023.07.12 2023.07.12	서울교육강 교육센터	147,000원	신청가능 (13/25) 신청하기 >
미입금	2023년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업) - 비환급	2023.07.19 16시간	서울교육강 교육센터	208,000원	신청가능 (4/50) 신청하기 >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메인화면 바로가기

수강신청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상설교육 신청

- 여러가지 조건으로 개설된 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과정명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 > 건설업(비환급 비지정, 16시간)

2023년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업) - 비환급 16시간

- 학습기간 2023.06.12 ~ 2023.06.19
- 교육장소 서울교육장
- 교육시간 2일(16시간)
- 교육수수료 208,000원
- 경 원 60명
- 합속여부 비환급

수강신청
비환급 수강신청

과정개요 시간표 교육장 안내

과정소개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

교육대상
사업장 내 실무적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자

수도시 혜택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 수강 안내
- 접수인원 20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시간안내] 1, 2일차 09:00 - 18:00 까지입니다.
* 교육시간은 지역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각, 조퇴 등 교육 미참여 시간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등을 습득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할을 키우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신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③수강신청 클릭

● 혼합교육(집체교육 8시간+인터넷교육 8시간) 신청

대한산업안전협회
집체교육센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공지사항
교육문의
직무교육신청
바로가기
건설교육
바로가기

협회 자료실 | 공단 자료실

과정명을 검색하세요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대표자 회장 박종선 | 사업자등록번호 130-82-07009 | 문의 교육문의 및 연락처 협조
Copyright (C) 2014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
교육문의 및 연락처

위탁계약서
합격통장
수료증 출력 (실시확인서, 수료증 등)

교육신청 (관리감독자교육 등)
①교육신청 클릭
교육신청확인 (장 위치 등)

2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메인화면 바로가기

NISA 수상신청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상설교육 신청

- 여러가지 조건으로 개설된 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과정명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 > 상설교육 신청 > 수상신청

수강신청

과정분류 > 교육종류 > 교육장 (지역명칭에 마우스를 올리면 상세 지역이 표기 됩니다.)

전체 > 1 > 2 > 3 > 4 > 5 > 6 > 7 >

ISTEP 지역시도를 선택해 주세요. ZSTEP 지역을 선택해주세요(선택)

서울/경기도

01 교육센터
02 서울
03 서울동부
04 경기
05 안산
06 경기서부
07 경기남부
08 성남
09 경기북부

신청가능여부 [신청가능] 과정명 [] 검색 [] 지역초기화

총 4 건 [10개씩]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장	교육수수료	신청가능
2023년도 권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업) - 비환급 16시간	2023.06.12 ~ 2023.06.13	서울교육장 [교육도보기]	208,000원	신청가능 (20/50) [신청하기]
2023년도 권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업) - 비환급 18시간	2023.07.12 ~ 2023.07.12	서울교육장 [교육도보기]	116,000원	신청가능 (3/25) [신청하기]
2023년도 권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업),집체+인터넷 *필과 : 집체교육 종료 후 필수임 이내 학습문 지 별도 발송	2023.07.12 ~ 2023.07.12	서울교육장 [교육도보기]	147,000원	신청가능 (13/25) [신청하기]
2023년도 권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업) - 비환급 16시간	2023.07.13 ~ 2023.07.20	서울교육장 [교육도보기]	208,000원	신청가능 (4/50) [신청하기]

②신청하기 클릭

3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메인화면 바로가기

NISA 수상신청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상설교육 신청

- 여러가지 조건으로 개설된 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과정명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 > 상설교육 신청 > 수상신청

수강신청

권리감독자교육 > 온한·건설업(훈련비 미지원_16시간)

2023년도 권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업)_집체+인터넷

인간보안교육

수강신청

비환급 수강신청

과정개요

시간표

교육장 안내

과정소개

사업장에서 권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

교육대상

사업장 내 실질적인 권리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자

수도시 선택

대한산업안전협회 연정교육 피강 안내
- 접수인원 20명 미만 시 피강할 수 있으나 양해부탁드립니다.

[교육시간안내] 09:00 ~ 18:00 까지입니다.
* 교육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8시간)이 포함된 과정입니다.
* 지차, 소외 등 교육 이환이 시가는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권리감독자는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등을 습득함과 동시에 권리감독자의 역할을 이차하고 역할을 키우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권리감독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신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③수강신청 클릭

● 인터넷교육(8시간) 신청

1

대한산업안전협회
KISA원격교육센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통장 및 사연자등록증 다운로드

공지사항

교육신청 (근로자, 관리감독자, 신규채용자 등)

강의실 (강의수강 및 평가 응시)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센터 (<https://www.esafe.or.kr>) 접속

학습지원
1544-3743
FAX: 0507-351-7009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수료증 출력

과정명을 검색하세요

교육청 안전보건교육 바로가기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310 대표자 박중선 (대리인 이후석) 사업자등록번호 404-02-28297 통신판매업신고 제2017-서울금천-1476호
고객지원센터 1544-3743 팩스 0507-351-7009

Copyright(C) 2014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 협회소개

GEI
교육품질인증
2017년

2

대한산업안전협회
KISA원격교육센터

강독우님 환영합니다.

강의실 입장

내정보 로그아웃

통장 및 사연자등록증 다운로드

공지사항

교육신청 (근로자, 관리감독자, 신규채용자 등)

강의실 (강의수강 및 평가 응시)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 및 개인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지원
1544-3743
FAX: 0507-351-7009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수료증 출력

과정명을 검색하세요

교육청 안전보건교육 바로가기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310 대표자 박중선 (대리인 이후석) 사업자등록번호 404-02-28297 통신판매업신고 제2017-서울금천-1476호
고객지원센터 1544-3743 팩스 0507-351-7009

Copyright(C) 2014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 협회소개

GEI
교육품질인증
2017년

3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김동우 님 로그인 중입니다 [개인정보](#) [로그아웃](#)

교육소개 수강신청 강의실 고객센터

③ 개인수강 클릭 ~ 취소내역

Home > 강의실 > 나의강의실

나의강의실

* 수강신청한 정규과정의 학습중인 과정, 학습대기 과정, 학습완료 과정 입니다.
* 학습중인 과정, 학습완료 과정은 학습기간, 복습기간에 강의실 입장하여 학습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 나의강의실 >
- 신규검수(관리자용) >
- 검수현황(관리자용) >
- 학습현황(관리자용) >
- 개인정보 >

학습신청과정

교육유형	과정명	수강신청일	학습기간	공문서출력	결제상태	수강승인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학습중인과정

교육유형	과정명	학습기간	공문서출력	결제상태	강의실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학습완료과정

교육년도: 2023 교육유형: 전체 검색

교육유형	과정명	학습기간	성적	수료결과	결제상태	강의실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수료증출력, Q&A, 원격지원, 용어사전, 안전소식

4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김동우 님 로그인 중입니다 [개인정보](#) [로그아웃](#)

교육소개 수강신청 강의실 고객센터

Home > 수강신청 > 개인수강 > 인터넷원격

인터넷원격

*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정명을 선택하여 과정 상세정보를 확인 후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 개인수강 >
- 인터넷원격 >
- 취소내역 >
- 취소내역 >

과정구분: 전체 과정명: 검색 **선택 과정 초기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안전	관리감독자 교육	제조업
그외(4대업)	근로자 정기교육	서비스업
기타	신규채용자 교육	건설업
	특별안전보건 교육	그외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안전관리자)	
	직무교육(안전관리전문기관종사자)	
	일반안전	

총 1 건 30 개씩

환급여부	과정명	개강일	과정맞보기	수강신청
비환급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 - 비환급 2023년	출제시계강	-	신청하기

④ 신청하기 클릭

안전소식

5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교육소개', '수강신청', '강의실', and '고객지원'. The page title is '인터넷원격'. A sidebar on the left lists '수강신청' categories: '개인수강', '인터넷원격', '취소내역', and '취소내역'.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course card for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 - 비환급 2023년'. The course details are: 신청기간 상시과정, 학습시간 31 일 (8시간), 교육수수료 44,000 원, and 정원 10,000 명. A '수강신청' button is visible. Below the course card, there are tabs for '과정개요', '학습목차', and '강사소개'. The '학습목표' section lists four objective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for construction site supervisors.

⑤수강신청 클릭

● 우편교육(16시간) 신청

1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titu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교육원 소개', '수강신청', '나의강의실', '고객센터', and '계산서 발행'. The page title is 'JOIN WITH US ON ZOOM'. A dropdown menu is open under '수강신청', listing various course options. The option '관리감독자(우편교육)' is highlighted with a red dashed box and a red arrow pointing to it, with the text '①관리감독자(우편교육) 클릭'. Below the dropdown, there is a '비대면(화상)교육 입장' button. A notice at the bottom states: '하신 노트북, 웹캠 등의 문제로 화면이 송출되지 않을 시 미수로 처리되오니 스템이 화상교육에 적합한지 테스트 해보신 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국종합안전교육 (<https://www.ksse.kr>) 접속

단체신청
MORE

계산서 발행
MORE

수료증 발급
MORE

2

관리감독자(우편통신)

- 카테고리 - 전체 SEARCH

 <p>[우편통신_제조업] 관리감독...</p> <p>66,000원 50,000원</p> <p>수강신청</p>	 <p>[우편통신_건설업] 관리감독...</p> <p>66,000원 50,000원</p> <p>수강신청</p>	 <p>[우편통신_서비스업] 관리감독...</p> <p>66,000원 50,000원</p> <p>수강신청</p>	 <p>[교육서비스업] 우편통신 관리...</p> <p>66,000원 58,000원</p> <p>수강신청</p>
---	---	--	--

②수강신청 클릭

3

[우편통신_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수강기간 30일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180일 까지
	강의구성 0차시
	교육비 50,000원
	수강신청하기

③수강신청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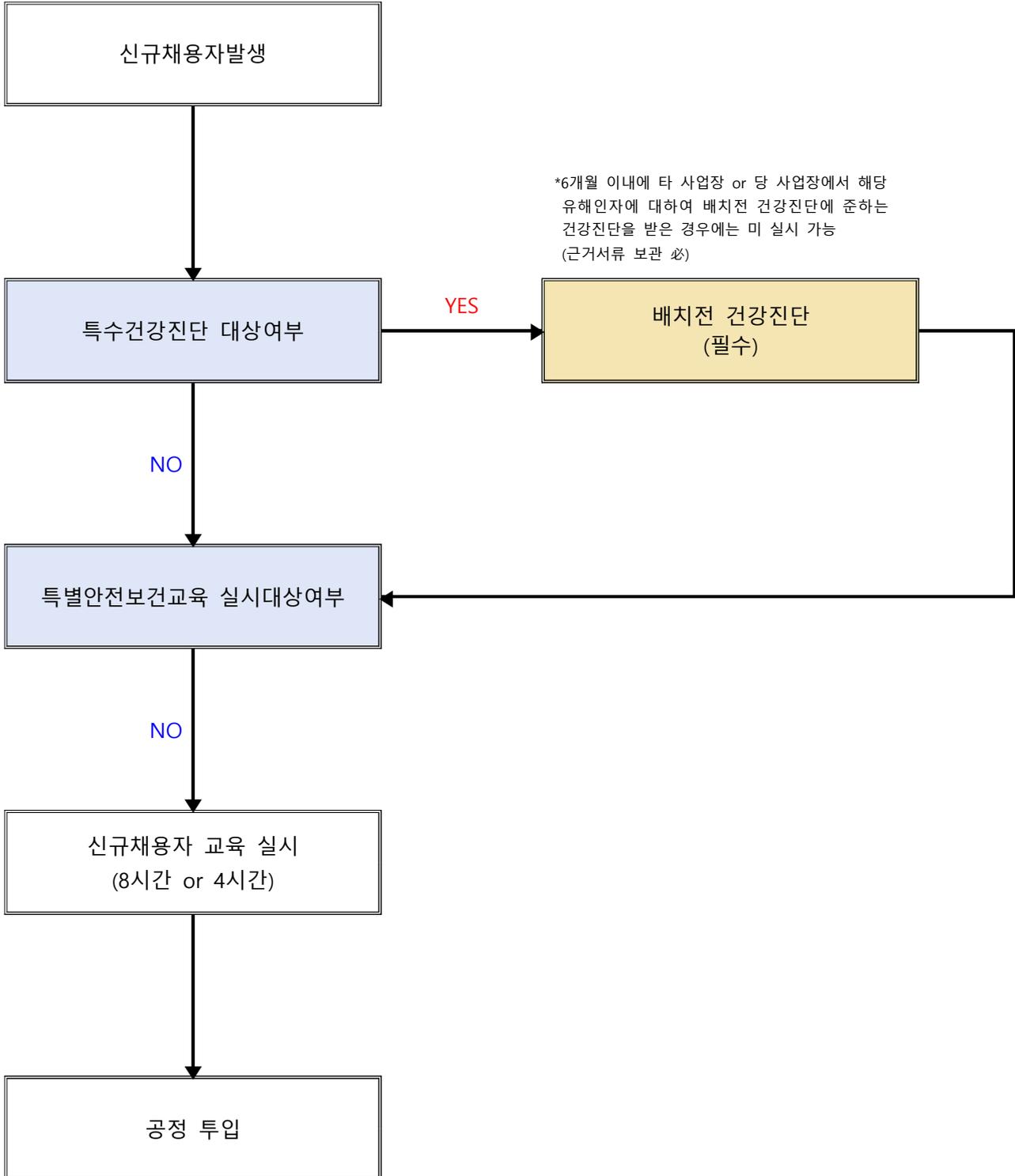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u>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u>	50	250	500	파. - 2)	①관리감독자 미교육시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라.	①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시

5. 근로자 대상교육

1) 신규채용자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



[신규채용자교육 절차]

① 근거법령 [별표 30]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교육대상 및 시간 [별표 15]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건설사업장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채용시	8시간	4시간

③ 면제조건 및 시간 [별표 31]

대상교육	면제조건	면제시간
채용시 교육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시간 50%면제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교육시간 100%면제

④ 교육방법

- ㉠ 현장교육(강의식)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⑤ 교육실시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관리감독자

⑥ 교육내용 [별표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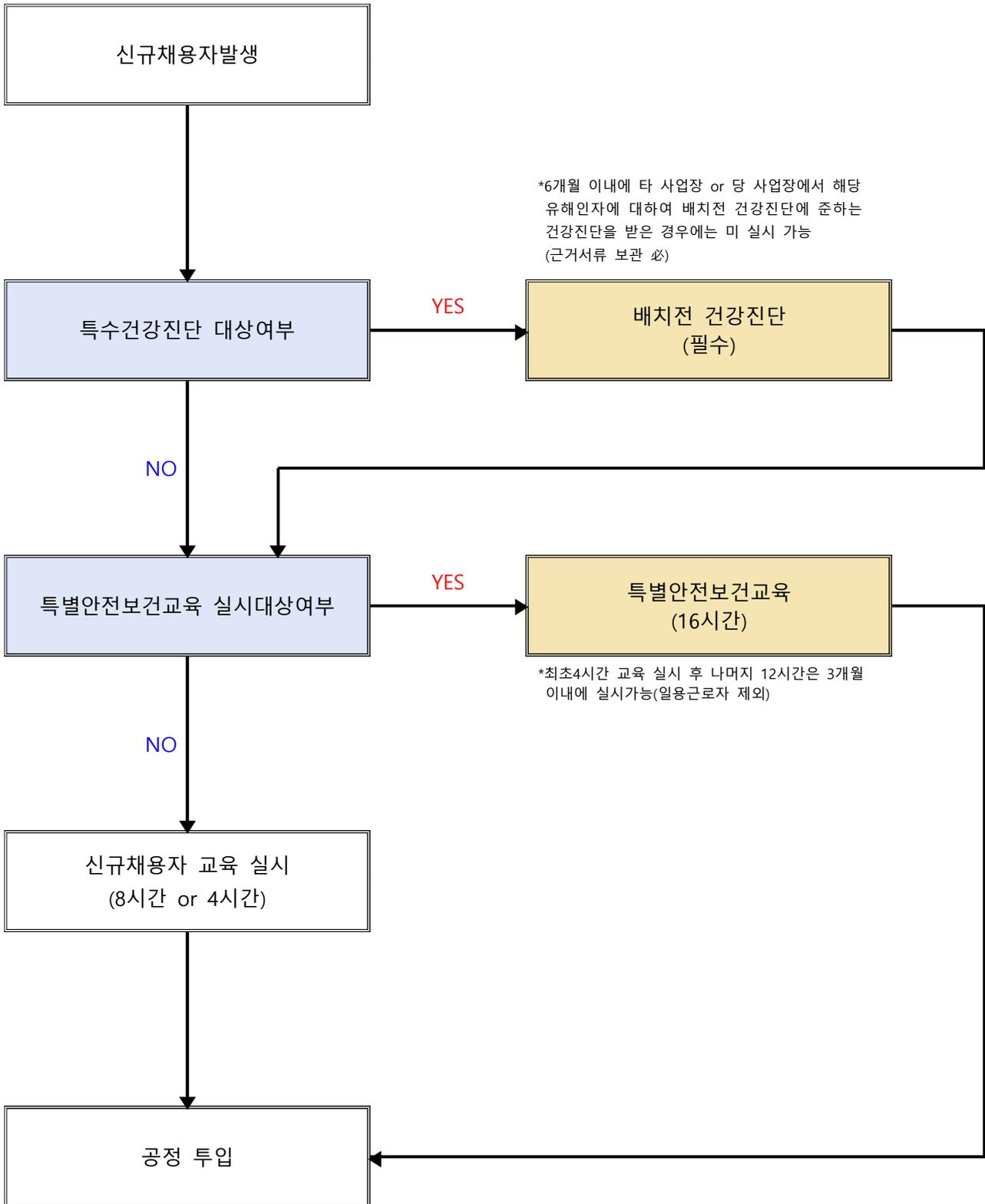
구분	교육내용
채용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⑦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0	20	50	하.	①신규채용자 미교육시

2) 특별안전교육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



[특별안전교육 절차]

① 근거법령 [별표 30]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교육대상 및 시간 [별표 15]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안전교육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③ 교육방법

- ㉠ 현장교육(강의식)
- ㉡ 인터넷 교육

④ 교육실시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관리감독자

⑤ 교육내용 [별표 33]

구분	교육내용
특별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 제1항 등 관련)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참조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9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u>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u>	50	100	150	거.	①특별안전교육 미 실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즉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① 교육대상 건설기계 [별표 34]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벡칭 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향타 및 향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② 교육과정 및 시간 [별표 16]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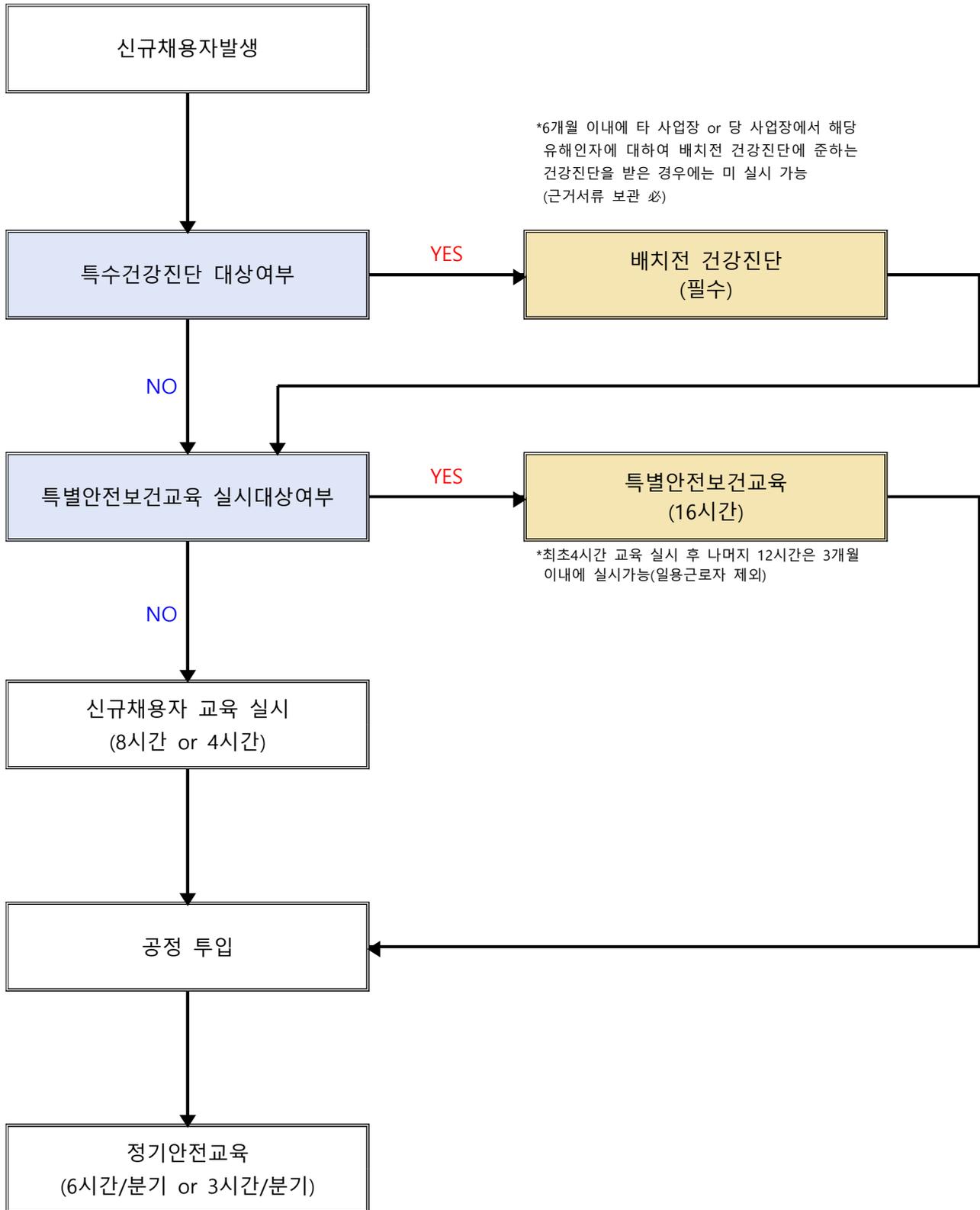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안전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③ 교육내용 [별표 35]

구분	교육내용
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p>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제1호 라목과 같다.

4) 정기안전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



[정기안전교육 절차]

① 근거법령 [별표 30]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교육대상 및 시간 [별표 6]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건설사업장	
			산업재해발생	무재해
정기안전교육	사무직 종사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3시간

③ 면제조건기준 [별표 31]

- ㉠ 전년도 산재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50%면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자 100%면제
-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이수자 100%면제

③ 교육방법

- ㉠ 현장교육(강의식)
- ㉡ 인터넷 교육

④ 교육실시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관리감독자

⑤ 교육내용 [별표 36]

구분	교육내용
정기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파. - 1)	① 정기안전교육 미 실시

5) 물질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누출 사고시의 대처방법등에 대한 교육

① 근거법령 [별표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② 교육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③ 교육시기 [별표 17]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 근로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 ㉣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교육방법

- ㉠ 현장교육(강의식)

⑤ 교육실시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관리감독자

⑤ 교육내용 [별표 37]

구분	교육내용
물질안전 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14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u>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u>	10	20	50	티.	①물질안 전교육 미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및 계상기준[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별표 38]

구분	내용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단기계약에 의한 공사는 총 계약금액 기준 적용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대상액 × 적용비율 √ 대상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 × 적용비율 + 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 공사금액(VAT포함)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 대상액 = 직접노무비 + 재료비(직·간접재료비) √ 관급(직급)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상한 산안비는 포함하지 않은 산안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 39]

공사종류	대상액	50억원 이상 50억 미만		50억원 이상 적용비율(%)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적용비율(%)	
		50억원 미만 적용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별표 40]

공정율 (※기성공정율 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4. 사용기준 [별표 41]

- | | |
|---------------------------|-----------------|
|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② 안전시설비 등 |
| ③ 보호구 등 |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 |
| ⑤ 안전보건교육비 등 | ⑥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⑦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수수료 등 | ⑧ 본사 사용비 등 |
| ⑨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근로자 건강검진

1.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

종 류	대 상 [별표 42]	실 시 시 기 [별표 43]
일 반 건강진단	√ 상시 사용 근로자(주기적으로 실시)	√ 사무직 종사 근로자 2년/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1년/1회 이상
특 수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가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업무 적합성 평 가를 위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수 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 해인자에 의한 건강장애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건강장애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
임 시 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지체 없이 실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별표 44]

2.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별표 13]

구 분	대상 유해인자	실 시 시 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배치 후 1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이후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2	벤젠	√ 배치 후 2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이후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배치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이후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4	석면, 면 분진	√ 배치 후 12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이후 1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배치 후 12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이후 24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 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이후 1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중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 특수,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 공중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 특수, 임시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해당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단축 판정을 받은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1. 측정대상 [별표 4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2. 작업환경측정 내용 [별표 46]

①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2종]

구 분	내 용
화학적 인자 [183종]	√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물리적 인자 [2종]	√ 8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분진 [7종]	√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석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기 타	√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측정대상 제외 작업장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0조 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영 제30조 허가대상유해물질, 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2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임 시 작 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단시간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② 작업환경측정 횟수 및 결과보고 [별표 47]

구 분	내 용	
작업환경 측정횟수	원 칙	√ 대상 작업자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주기 단축	√ 측정결과 화학적인자 고시된 물질의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고시 제외 물질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시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주기 연장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시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1년에 1회 이상 측정 [허가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취급하는 공정은 제외]
결과 보고	√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신고 [기준 초과시 60일 이내에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선계획 제출]	
서류 보존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고시된 물질은 30년)	

◆ 안전 · 보건 회의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안전보건협의체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산안법	제24조 [별표 48]	제75조 [별표 51]	제64조 [별표 54]
대상	√ 공사금액 120억 [토목 150억] 이상 [별표 49]	√ 공사금액 120억 [토목 150억] 이상 [별표 52]	√ 전체 건설업 [별표 54]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장 대표자 √ 안전·보건관리자 각 1명 √ 9명 이내 부서의 장 [대표자가 지명] [별표 50]	√ 해당 사업장 대표자 √ 안전·보건관리자 각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 및 하도급 사업주 [별표 52]	√ 도급·수급 사업주 전원 [도급, 하도급 현장소장] [별표 55]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 명예감독관 [지명된 경우 그 수 제외] √ 9명 이내 근로자 [근로자대표 지명] [별표 50]	√ 근로자 대표 √ 명예감독관 [미위촉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 √ 공사금액 20억이상 하도급 근로자 대표 [별표 52]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 [별표 51]			
회의	√ 정기회의 [3개월 마다 실시] [별표 50]	√ 정기회의 [2개월 마다 실시] [별표 52]	√ 매월 1회 실시 [별표 55]
회의록 작성	√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사항 [별표 50]	좌동	좌동
회의 결과	√ 게시, 조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전달 [별표 50]	좌동	좌동
심의 의결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일반/특수건강진단 외) 근로 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 록 및 유지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별표 48]	√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별표 53]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 방법 √ 재해발생위험시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 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별표 55]

※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설치·운영 같음. [별표 51]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

1. 안전검사 [별표 56]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① 안전검사대상기계 및 검사주기

번호	검사대상품 [별표 57]	검사주기 [별표 58]	표시부호
1	크레인 [이동식, 정격하중2톤 미만 제외]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건설현장]	C
2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건설현장]	D
3	곤돌라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건설현장]	F
4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 마다 실시]	K
5	프레스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 마다 실시]	A
6	전단기		B
7	압력용기		D
8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G
9	원심기 [산업용만 해당]		H
10	롤러기 [밀폐형 구조 제외]		I
11	사출성형기[형체결력294KN미만 제외]		J
13	컨베이어		L
14	산업용 로봇		M

② 안전검사 합격표시 [별표 59]

안전검사합격증명서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② 신청인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④ 합격번호	
⑤ 검사유효기간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 ○ ○ ○ ○ ○ (직인) 검 사 원: ○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div style="float: right; 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직인 생략 </div>	

합격표시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쉽게 내용식별,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 안전인증 [별표 60]

유해·위험기계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증

① 안전인증대상기계 [별표 61]

번호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는 기계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는 기계
1	크레인	프레스
2	리프트	전단기 및 절곡기
3	곤돌라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 휴게시설 관리

1. 설치대상 [별표 62]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설치·관리 기준 [별표 63]

1) 크기

- ①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한다.
- ②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

2) 위치

- ①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②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 ① 적절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 ① 적절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증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 ① 적절한 밝기(100lx~200l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1,500	1,500	1,500	하.	①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50	250	500	겨.	① 휴게시설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류의 보존

1. 법적 보존서류

구분	보존기간	보존서류	법규	비고
보존 서류	30년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별표 65]	산안법 [제164조1항] 시행규칙 [제241조1항]	[별표 64]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 입력자료 ※[별표 66]	산안법 [제164조1항] 시행규칙 [제241조2항]	
		√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별표 68]	산안법 [제164조6항]	[별표 67]
	5년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 시행규칙 [제241조1항]	[별표 69]
		√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 시행규칙 [제241조2항]	
		√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별표 71]	산안법 [제164조5항]	[별표 70]
	3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1호]	[별표 72]
		√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별표 73]	산안법 [제164조1항3호]	
		√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별표 74]	산안법 [제164조1항4호]	
		√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별표 75]	산안법 [제164조1항5호]	
		√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6호]	
		√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별표 76]	산안법 [제164조1항7호]	
		√ 안전인증·안전검사 및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산안법 [제164조2항]	
		√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	산안법 [제36조3항] 시행규칙 [제27조]	

구분	보 존 기 한	보 존 서 류	법규	비고
보존 서류	2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회의록	산안법 [제164조1항2호]	[별표 78]
		√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산안법 [제164조2항]	
		√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기록 서류		
	1년	√ 건설공사도급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명세서 ※[별표 80]	산안법 [제72조3항]	[별표 79]
	별도 정해지지 않음 ※	√ 순회점검 등 안전점검 실시 서류	산안법 [제64조1항2호]	
		√ 안전보건교육 실시 서류	산안법 [제2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실시 서류	산안법 [제114조3항]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서류	산안규칙 [제38조]	
		√ 밀폐공간 긴급 구조 훈련 결과 기록 서류	산안규칙 [제640조]	
		√ 그 외 기타 서류		
<p>※ 별도 정해지지 않은 서류의 경우, 보통 고용노동부 감독시 최근 3개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에 따라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5년의 서류보존 기한을 정하여 관리를 권장함</p>				

[제 3 장]

참 고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법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7조, 제18조,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제조업
- 다. 토사석 광업
-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별표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별표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별표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별표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별표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별표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19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별표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별표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별표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 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별표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먼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 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 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별표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별표 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별표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별표 18]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별표 19]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직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별표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표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별표 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8. 16.>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 · ·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 ·	· · ·	· · ·

비고

-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별표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 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별표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별표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별표 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8, 8877, 8813,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 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별표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별표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별표 30]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학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별표 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8. 18.>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별표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8. 18.>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압 장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 흠,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p>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착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숲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2.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률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 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동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3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딛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8. 18.>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p>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별표 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8. 18.>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3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8. 18.>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별표 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제4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격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격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별표 3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별표 1](개정, 2018.10.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공사종류 구 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별표 4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등**

-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나. 근로자가 가액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나. 중대재해 목적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료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삭 제>
-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 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202조, 제20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별표 4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11. 19.>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 1) 가솔린(Gasoline; 8006-61-9)
-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 7)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 8)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 18)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 19)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 22)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 24)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 25) 마젠타(Magenta; 569-61-9)
- 26) 메탄올(Methanol; 67-56-1)
-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 28)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 29)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 30)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 31)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 32)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 33)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 34)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 35)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 36)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 39)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 40)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 41) 벤젠(Benzene; 71-43-2)
- 42) 벤지딘 및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 4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 44) n-부탄올(n-Butanol; 71-36-3)

- 45) 2-부탄올(2-Butanol; 78-92-2)
-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 48)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 49)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 50)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 51)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 5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 54) 스티렌(Styrene; 100-42-5)
-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 58)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 59)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 60)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 61) 아세톤(Acetone; 67-64-1)
- 62)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 6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 68)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 6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 7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 7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 7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 74)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 75)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 76)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 77)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 78)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 79)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 80)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 8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 84) 크레졸(Cresol; 1319-77-3 등)
-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 8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 87)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 90)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 91) 톨루엔(Toluene; 108-88-3)
-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 9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 9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79-01-6)

-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 9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 99) 페놀(Phenol; 108-95-2)
-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 10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 102)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57-57-8)
- 103)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91-15-6)
-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 106) n-헥산(n-Hexane; 110-54-3)
- 107) n-헵탄(n-Heptane; 142-82-5)
- 10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 109)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 110) 1)부터 109)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0종)

- 1) 구리(Copper; 7440-50-8)(분진, 미스트, 흙)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5)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 6)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분진, 흙)
-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흙)
- 8)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1327-53-3)
-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 10)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 11)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분진, 흙)
- 13)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 14)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 15)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 16)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 1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 18) 코발트(Cobalt; 7440-48-4)(분진, 흙)
- 19)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 20)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 21) 1)부터 20)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칼리류(8종)

- 1)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 2)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 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 4)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 6) 질산(Nitric acid; 7697-37-2)
-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1) 불소(Fluorine; 7782-41-4)
- 2) 브롬(Bromine; 7726-95-6)
-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 6) 염소(Chlorine; 7782-50-5)
 - 7) 오존(Ozone; 10028-15-6)
 - 8)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 9)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 12) 포스겐(Phosgene; 75-44-5)
 - 13) 포스핀(Phosphine; 7803-51-2)
 -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 15) 1)부터 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1) α -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 -naphthylamine and its salts)
 -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 다. 면 분진(Cotton dusts)
 - 라. 목재 분진(Wood dusts)
 - 마. 용접 흄(Welding fume)
 -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 인자(8종)
-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 라. 고기압
 - 마. 저기압
 - 바. 유해광선
 - 1) 자외선
 - 2) 적외선
 -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 8)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 13)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 14)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 17) 1,4-디옥산(1,4-Dioxane; 123-91-1)
-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 19)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 2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 21)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 22)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 23)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 24)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 26)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 27) 메탄올(Methanol; 67-56-1)
- 2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 33)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 36)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 37)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 39)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 40)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 41)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 42)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 43) 벤젠(Benzene; 71-43-2)
- 44)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 45) n-부탄올(n-Butanol; 71-36-3)
- 46) 2-부탄올(2-Butanol; 78-92-2)
- 47)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 49)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 5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 5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 53)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 5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 55) 스토타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 56) 스티렌(Styrene; 100-42-5)
- 57)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 58)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 59)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 60)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 61)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 6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 63) 아세톤(Acetone; 67-64-1)
- 6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 6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 66)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 68)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 6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 72)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 7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 74)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 7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 78)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 7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 8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 8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 84)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 86)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 88)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 89)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 90) 크레졸(Cresol; 1319-77-3 등)
- 91) 크실렌(Xylene; 1330-20-7 등)
- 92)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 9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 94)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 95) 톨루엔(Toluene; 108-88-3)
- 9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 97) 톨루엔-2,6-다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 98)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 99)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 100)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 102)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 103)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 104) 페놀(Phenol; 108-95-2)
- 105)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 10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 10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 109) 피리딘(Pyridine; 110-86-1)
- 110) 헥사메틸렌 다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 111) n-헥산(n-Hexane; 110-54-3)
- 112) n-헵탄(n-Heptane; 142-82-5)
- 11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 114)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4종)**

-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흠)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 8)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분진, 흠)
- 9)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흠)
- 10)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흙)
-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 1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수소화 주석은 제외한다)
-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 15) 초산(Acetic acid; 64-19-7)
-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1) 불소(Fluorine; 7782-41-4)
- 2) 브롬(Bromine; 7726-95-6)
-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 7) 염소(Chlorine; 7782-50-5)
- 8) 오존(Ozone; 10028-15-6)
-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 13) 포스겐(Phosgene; 75-44-5)
-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1) α -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 -naphthylamine and its salts)
-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나.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 1) 규산(Silica)
-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 나) 크리스토팔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 가)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 나) 운모(Mica; 12001-26-2)
- 다)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 라)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 마) 흑연(Graphite; 7782-42-5)
-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 다. 면 분진(Cotton dusts)
- 라. 목재 분진(Wood dusts)
-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 바. 용접 흠(Welding fume)
- 사. 유리섬유(Glass fiber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비교: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별표 48]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4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별표 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별표 51]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별표 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나. **안전관리자 1명**
 -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별표 5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별표 54]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별표 56]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 5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5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1. 합격표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② 신청인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④ 합격번호	
⑤ 검사유효기간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 ○ ○ ○ ○ ○ (직인) 검 사 원: ○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margin-left: 10px;">직인 생략</div>	

2. 표시방법

-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 나. ③ 형식번호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	□□	□□	-	□	-	□□□□
㉠ 합격연도		㉡ 검사기관	㉢ 지역(시·도)		㉣ 안전검사대상품		㉤ 일련번호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예시: 2015 → 15, 2016 → 16)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지역(시·도)은 해당 번호를 적는다.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서울특별시	02	광주광역시	62	강원도	33	경상남도	55
부산광역시	51	대전광역시	42	충청북도	43	전라북도	63
대구광역시	53	울산광역시	52	충청남도	41	전라남도	61
인천광역시	32	세종시	44	경상북도	54	제주도	64
		경기도	31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및 표시부호

번호	종류	표시부호
1	프레스	<u>A</u>
2	전단기	<u>B</u>
3	크레인	<u>C</u>
4	리프트	<u>D</u>
5	압력용기	<u>E</u>
6	곤돌라	<u>F</u>
7	국소배기장치	<u>G</u>
8	원심기	<u>H</u>
9	롤러기	<u>I</u>
10	사출성형기	<u>J</u>
11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u>K</u>
12	컨베이어	<u>L</u>
13	산업용 로봇	<u>M</u>

㉔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 라. ㉔ 유효기간은 합격 연·월·일과 효력만료 연·월·일을 기입한다.
- 마.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 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바.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쉽게 내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60]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 가. **크레인**
 - 나. **리프트**
 -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러기**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아. **고소(高所)작업대**
 - 자. **곤돌라**

[별표 6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 가. 전화 상담원
 -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 다. 텔레마케터
 - 라. 배달원
 -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바. 아파트 경비원
 -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별표 6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C ~ 28°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별표 6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제241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 ②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를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③ 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2. 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 ④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 ⑤ 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 ⑥ 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별표 65]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2020. 1. 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1

제5조(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의 적용제외 등) 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 제19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단서, **제241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
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별표 66]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시행 2023. 2. 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2023. 2.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건강진단 지원·보조"란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칙 제241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 가. **영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나.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별표 67]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별표 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제241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 ②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③ 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2. 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 ④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 ⑤ 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 ⑥ **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별표 6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제241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 ②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를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③ 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2. 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 ④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 ⑤ 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 ⑥ 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별표 70]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별표 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제241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 ②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를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③ 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2. 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 ④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 ⑤ **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 ⑥ 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별표 72]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직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별표 7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8, 8877, 8813,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 [전문개정 2021. 11. 19.]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 [전문개정 2021. 11. 19.]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 [전문개정 2021. 11. 19.]

[별표 7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별표 7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중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별표 7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별표 78]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별표 7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 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별표 8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1. 19.>

[제 4 장]

부 록

◆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1호		1,000	1,000	1,000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2호		1,000	1,0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바.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20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7조제4항,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2호		500	500	500
아.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자.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차.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카.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50	300	500
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	250	500
파.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 법 제29조제2항(법 제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거. 법 제29조제3항(법 제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 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더.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법 제175조 제6항 제1호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러.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3호		50	25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2호		30	150	300
버.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거나 설치·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1개소당	10	30	50
서. 법 제40조(법 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5	10	15
어. 법 제41조제2항(법 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300	600	1,000
저.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처.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4호		30	15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커.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30	150	300
터.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300	600	1,000
퍼.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	250	500
허.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300	600	1,000
고.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5	10	15
노.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30	150	300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	1,000	1,000
로.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1)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모.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보.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	250	500
소.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오. 법 제53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4호		50	250	500
조.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1)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초.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코.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	500	500
토. 법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3항 제2호의2		500	1,000	1,500
포. 법 제6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호. 법 제6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구.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누.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두.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루.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무. 법 제7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부. 법 제7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수. 법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우.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0만원)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주.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주. 법 제7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쿠.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6호		100	200	300
투.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6호의2		100	200	300
푸.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후.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500	700	1,000
그.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10	20	50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50	100	150
느.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500	700	1,000
드.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1,500	2,000	3,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르. 법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5호		500	700	1,000
므.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7호		300	300	300
브.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	500	1,000
스.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자율안전확인대상별)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
으.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법 제175조제4항제3호		200	600	1,000
즈.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
츠.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크. 법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법 제175조제4항제3호		300	600	1,000
트.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프.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		100	200	500
흐. 법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30	150	300
기.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		500	500	500
니.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5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00	500
디. 법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6호		500	500	500
리. 법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7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	200	500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	20	5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100	200	500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10	20	50
미. 법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6항제9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30
비. 법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8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	500	5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자가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9호		500	500	500
이.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0호		100	200	500
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1호		500	500	500
치.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12호		100	200	500
키.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3호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	20	5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티. 법 제114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0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피. 법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6항제11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한 경우(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10	20	5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히.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2호		철거는 해체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금 다 해 10 원 만 경우 는 만 원 으로 당 해 금 이 100 만 원 을 초 과 하 는 우 에 는 100 만 원 으로 한다.		
가. 법 제1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1항제1호		철 거 또 해 공 금 100 의 에 당 해 금 다 해 10 원 만 경우 는 만 원 으로 당 해 금 이 100 만 원 을 초 과 하 는 우 에 는 100 만 원 으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철거 또는 해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3,000	5,000
나. 법 제1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3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라. 법 제1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5	10	15
마.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바.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4호		100	200	300
샤. 법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야.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자.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3호		100	300	500
차.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500	5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법 제1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타. 법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5호		100	300	500
파. 법 제1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00	300	500
하.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1,500	1,500	1,500
거.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50	250	500
녀.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더.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500	500	500
러. 법 제1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0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며. 법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300	300	300
며. 법 제1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서.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5	10	15
저. 법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쳐. 법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켜.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3호	1)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터. 법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4호		1,500	1,500	1,500
펴. 법 제14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혀. 법 제149조를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1)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규.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6호		300	300	300
뉴.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8호		1,000	1,000	1,000
듀. 법 제155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류. 법 제156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7호		300	300	300
뮤.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30	150	300